

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1항중 '월100,000원이하의'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수당) ①고문번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<u>월100,000원이하의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수당) ①..... (삭 제)</p>